

# 예 산 총 칙

201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| 6,435,165,309 | 193,054,959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| 5,555,583,166 | 166,667,495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| 879,582,143   | 26,387,464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| 408,753,360   | 12,262,601  |
|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      | 408,753,360   | 12,262,601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| 470,828,783   | 14,124,863  |
|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| 48,409,189    | 1,452,276   |
|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 | 3,500,000     | 105,000     |
|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      | 86,000        | 2,580       |
|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    | 416,483,849   | 12,494,515  |
|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    | 2,349,745     | 70,492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,041,56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7,5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